
천안삼거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도



천안삼거리요양원



천안삼거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제1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입소일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 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제2조 (계약 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입소 전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입소이용료 기준-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② 기타비용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비치하여 안내한다.
- ⑤ 장기요양 비수급 대상자(등급 외)의 경우 1일 5만원 ~ 6만원의 이용료가 발생되고 기타 비급여 비용은 실비나 시설장이 정한 금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⑦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으로 계약만료시에는 만료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⑧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첨]에 따른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 요청 권리
 - 3.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 요구 권리
 - 4. 수급자의 급여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권리
 - 5.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요구 권리
-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

제5조 (계약의 해제)

-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병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 때(단, 시설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이용료 변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 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5. 장기요양 비수급 대상자(등급 외)의 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자적 방법 또는 구두로 통지한 후 적용한다.

이용료 변경사항	안내 절차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의 만료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유선안내 후 계약서 재작성
장기요양이용료 본인부담율의 변경	유선안내 후 적용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변경	전자적 방법 또는 문자 안내후 적용
비급여 항목 비용의 변경	전자적 방법 또는 문자 안내후 적용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납부방법)

-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요양원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④ 이용료 납부방법은 천안삼거리요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별첨

■ 등급별 시설 입소 비용(급여+비급여) 안내(2025년도 기준)

- 정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율에 시설 0%가 기재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20%]

(단위:원/월)

요양 등급	일일 수가	1개월 (30일 기준)	공단부담금(80%) (30일 기준)	본인부담금(20%) (30일 기준)	식재료비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합계 (30일 기준)
		1개월 (31일 기준)	공단부담금(80%) (31일 기준)	본인부담금(20%) (31일 기준)	식재료비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합계 (31일 기준)
1등급	90,450	2,713,500	2,170,800	542,700	378,000	920,700
		2,803,950	2,243,160	560,790	390,600	951,390
2등급	83,910	2,517,300	2,013,840	503,460	378,000	881,460
		2,601,210	2,080,968	520,242	390,600	910,842
3,4,5 등급	79,240	2,377,200	1,901,760	475,440	378,000	853,440
		2,456,440	1,965,152	491,288	390,600	881,888

※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 식재료비, 개인 진료비 및 약값, 개인사용물품 등

[일반 12%]

(단위:원/월)

요양 등급	일일 수가	1개월 (30일 기준)	공단부담금(88%) (30일 기준)	본인부담금(12%) (30일 기준)	식재료비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합계 (30일 기준)
		1개월 (31일 기준)	공단부담금(88%) (31일 기준)	본인부담금(12%) (31일 기준)	식재료비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합계 (31일 기준)
1등급	90,450	2,713,500	2,387,880	325,620	378,000	703,620
		2,803,950	2,467,476	336,474	390,600	727,074
2등급	83,910	2,517,300	2,215,224	302,076	378,000	680,076
		2,601,210	2,289,065	312,145	390,600	702,745
345 등급	79,240	2,377,200	2,091,936	285,264	378,000	663,264
		2,456,440	2,161,667	294,773	390,600	685,373

※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 식재료비, 개인 진료비 및 약값, 개인사용물품 등

[일반 8%]

(단위:원/월)

요양 등급	일일 수가	1개월 (30일 기준)	공단부담금(92%) (30일 기준)	본인부담금(8%) (30일 기준)	식재료비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합계 (30일 기준)
		1개월 (31일 기준)	공단부담금(92%) (31일 기준)	본인부담금(8%) (31일 기준)	식재료비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합계 (31일 기준)
1등급	90,450	2,713,500	2,496,420	217,080	378,000	595,080
		2,803,950	2,579,634	224,316	390,600	614,916
2등급	83,910	2,517,300	2,315,916	201,384	378,000	579,384
		2,601,210	2,393,113	208,097	390,600	598,697
345 등급	79,240	2,377,200	2,187,024	190,176	378,000	568,176
		2,456,440	2,259,925	196,515	390,600	587,115

※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 식재료비, 개인 진료비 및 약값, 개인사용물품 등

■ 천안삼거리요양원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2025.01.01. 기준>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3,800(1식 기준)
간식비	1,200(1일 간식)
진찰료 및 약제비	실비(L-tube 관련 처치 및 소모품 포함)
기타	개인용품 등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품 및 서비스 포함